

광주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나60184 판결 [선급금보증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나60184 판결

광주지방법원담양군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소10042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월강학원

피고, 피항소인 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8. 8. 29.

판결 선고 2018. 9. 19.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소1004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8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동건설'이라 한다)에게 창평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자이고, 피고는 성동건설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3. 성동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35,659,500원, 공사기간을 2016. 7. 1.부터 2016. 12. 27.까지, 선급금을 39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성동건설은 같은 날인 2016. 6. 23.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398,190,000원, 보증기간을 2016. 7. 22.부터 2017. 3. 27.까지로 정한 선급금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2. 성동건설에게 선급금으로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선급금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선급금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마. 이 사건 공사는 2017. 1. 18. 모두 완료되었다.

바. 원고는 2017. 1. 23.경 성동건설에 선급금 정산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고, 2017. 1. 25.경 피고에게 선급금 정산 잔액 상당의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성동건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241,000,000원을 하수급업체에 배분하지 않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선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하수급업체에 성동건설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29,482,71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성동건설이 선급금을 하수급업체에 배분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한 위 선급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보증금 29,482,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 등에 따른 선급금 정산절차가 유효하더라도 정산 후 성동건설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는 29,482,710원 상당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9,482,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성동건설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는 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성동건설이 선급금을 하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선금을 정산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

3. 판단

가.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총당되고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동건설에 선급금 반환청구를 하기 전인 2017. 1. 18.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 등과 관계없이 선급금은 전액 원고의 성동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총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수급인인 성동건설에 선급금 반환청구를 할 무렵인 2017. 1. 23.경 성동건설이 원고에게 반환할 선급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들은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원고가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선급금 반환채무는 정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약관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선급금 정산 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성금을 과다 지급하여 생긴 것으로 이 사건 약관상의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현호

판사황경환

판사장명